

의안번호	2216825
의 퇴 인	이종욱의원
회 답 일	2026.8.13.
추계번호	26D086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제3항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 자 등) 제3항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군사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5년마다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
호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측량 및 지형도면 작성,
민간인통제초소 이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호구역은 법 제5조제1항¹⁾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
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되며, 각 보호구역의 경계에 경계표지판이나 민간인통제초소 등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표시하고 있음

- 다만, 보호구역의 변경·해제의 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